

심 의 · 의 결

안건번호 제2020 - 38 - 183호

안 건 명 민원신고된 사업자 등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 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이사

의 결 일 2020. 6. 24.

주 문

1. 피심인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 처리위탁 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려면 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위탁 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실시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 가. 금 액 : 3,000,000원
 -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라.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

이 유

I. 기초 사실

1. (이하 '피심인'이라 한다)는 영리를 목적으로 시스템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받은 사업자로, 피심인의 일반현황 및 최근 3년간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 피심인의 일반현황 >

대표이사	설립일자	자본금	주요서비스	종업원 수

< 피심인의 최근 3년간 매출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3년 평균
매출액				

※ 자료 출처 : 피심인이 제출한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를 토대로 작성

II.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대상



2. 방송통신위원회는 피심인이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관리를 제3자에게 재위탁한 사실을 언론을 통해 인지하고 피심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를 조사(2019. 7. 15., 7. 17.)하였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사건경위

3. (개인정보 위탁) 피심인은 2018. 2. 2. (이하 '위탁사'라 한다)의 모바일 앱/홈페이지/커머스시스템 통합유지관리(개인정보 처리 위탁 포함) 계약(이하 '유지보수 계약', 계약기간 : 2018. 3. 1.~ 2019. 2. 28.)을 체결하였다.
4. 피심인은 (이하 '재수탁사'라 한다) 직원을 피심인의 소속으로 표기한 사업 수행 인력 목록을 첨부한 제안서(모바일앱/홈페이지/커머스시스템 통합유지 관리사업 제안, 2017. 12. 18.)를 위탁사에 제출하였다.
※ 유지보수 업무를 위해 투입되기로 한 최종 인력은 총 20명으로 이 중 13명은 재수탁사의 소속 직원임
5. (개인정보 재위탁) 피심인은 2018. 3. 2. 위탁사와의 유지보수 계약을 이행할 목적으로 재수탁사와 위탁 계약(계약기간 : 2018. 3. 1.~2019. 2. 28.)을 체결하였다.
6. 2018. 11. 29.과 2019. 4. 30., 위탁사는 유지보수 계약에 관한 보안점검을 위해 수탁사에 대한 현장실사를 진행하였는데, 피심인은 위탁사에 재수탁사의 사무실 주소()로 안내하여 현장실사를 진행하였고 위탁사의 현장실사 당시 재수탁사 직원에게 피심인의 명함을 사용하게 하여 유지보수 계약을 재위탁한 사실이 위탁사에 알려지지 않도록 한 사실이 있다.
※ 평소에도 재수탁사 직원이 위탁사 관계자와 회의를 진행하거나 이메일 등을 주고

받은 경우에 피심인의 명함을 사용함

2. 2019. 3. 1. 피심인은 위탁사의 유지 보수 계약을 갱신(2019. 3. 1.~2020. 2. 29.)하였으나 언론을 통해 문제가 제기되자 2019.6.1. 위탁사로부터 유지보수 계약 해지 통보 공문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3. 사실 관계

가. 위탁자의 동의 없이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한 행위

8. 피심인은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한 위탁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위탁 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야 하나 위탁사의 동의 없이 2018. 3. 2. 재수탁사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재위탁한 사실이 있다.

※ 피심인과 위탁사가 2018. 2. 2.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며 작성한 계약서 별첨 문서인 「개인정보위탁에 대한 관리」 제4조(재위탁 제한)에 “수임인’은 ‘위임인’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임인’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나.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9. 방송통신위원회는 2019. 11. 13.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 시정조치(안) 사전 통지 및 의견 수렴’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 하였으며, 피심인은 2019. 11. 21.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정보통신망법 제25조제7항은 “수탁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등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3항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공무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해당 법 위반 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위탁자의 동의 없이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한 행위{정보통신망법 제25조(개인정보의 처리위탁) 중 재위탁동의}

10. 피심인이 위탁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위탁받은 업무를 재위탁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5조제7항을 위반한 것이다.

< 피심인의 위반사항 >

사업자 명	위반 내용	법령 근거		
		법률	시행령	세부내용(고시 등)
	재위탁 동의	§25⑦	-	위탁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위탁받은 업무를 재 위탁한 행위

IV. 시정조치 명령

1. 시정명령

11. 피심인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 처리위탁 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려면 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야 한다.



2.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12.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실시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V. 과태료 부과

13.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5조(개인정보의 처리위탁)제7항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6조제2항제1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별표9] 및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의 보호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지침」(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14.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9]와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이번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첫 번째에 해당하므로 1회 위반 과태료인 600만원을 적용한다.

〈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2회	3회 이상
차. 법 제25조제7항(법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재위탁한 경우	법 제76조 제2항제1호의2	600	1,200	2,000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증거인멸, 조작, 허위의 정보제공 등 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5. 그러나 피심인은 특별히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과태료를 가중하지 않는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당사자 환경, ▲사업규모와 자금사정, ▲개인(위치)정보보호 노력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6. 이에 따라 시정조치(안)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이내에 범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을 완료한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50%인 300만원을 감경한다.

< 과태료 산출내역 >

위반조문	기준금액	가중	감경	최종 과태료
§25⑦	600만원	없음	300만원	300만원
계				300만원

다. 최종 과태료

17. 이에 따라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5조제7항 위반행위에 대해 3,0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VII. 결론

18.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제4항(시정명령) 및



제76조제2항(과태료)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19.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 또는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1.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0년 6월 24일

위원장 한 상 혁



부위원장 표 철 수



위원 허 욱



위 원 김 창 룡



위 원 안 형 환

